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8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:백혜련・이병진・윤종군

정동영 · 이학영 · 이정문

한민수 어 영 어 정을호

송기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'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'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 피·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·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또한,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,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 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110조제2항 등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2항 중 "境遇"를 "경우(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)"로 한다.

제111조제2항 중 "境遇"를 "경우(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)"로 한다.

제20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.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경호구역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다.

제209조 중 "본문(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"을 "본문(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, 제200조의2제6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10條(軍事上 秘密과 押收) ①	第110條(軍事上 秘密과 押收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	②
大한 利益을 害하는 <u>境遇</u> 를 除	<u>경우(압수 또는</u>
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	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
한다.	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
	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
	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
	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
	<u>아니한다)</u>
第111條(公務上 秘密과 押收)①	第111條(公務上 秘密과 押收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	2
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	
을 害하는 <u>境遇</u> 를 除外하고는	<u>경우(압수 또는 수색</u>
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.	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「군형
	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
	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
	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
	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
	<u>니한다)</u>
第200條의2(영장에 의한 체포) ①	第200條의2(영장에 의한 체포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209조(준용규정) 제70조제2항, 제71조, 제75조, 제81조제1항 본문·제3항, 제82조, 제83조,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,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, 제93조, 제101조제1항, 제102조제2항 본문(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 및 제200조의5는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.

	⑥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	<u>)</u>
	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・	<u> </u>
	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. 군/	<u> </u>
	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	<u>=</u>
	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'	<u> </u>
	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🤊	경 <u></u>
	호구역에서 집행하는 경우에!	_ <u>_</u>
	같다.	
ᅦ	 209조(준용규정)	_
		_
		_
		_
		_
	ㅂㅁ(1	1
	<u>본문(</u>]	<u> </u>
	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의	<u> 기</u>
	한다), 제200조의2제6항	_
		_